##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·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72 발의연월일: 2024. 12. 13.

발 의 자:최보윤・서미화・이수진

김선교 • 서천호 • 윤종오

최수진 · 남인순 · 김선민

민형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, 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의 인권향상, 성평등 실현, 지속가능한 발전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,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·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·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,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.

또한, 장애인 인권,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

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 적·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·아동·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·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,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"학식과"를 "여성·아동·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등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"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헌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국제개발협력위원회) ① •	제7조(국제개발협력위원회) ① •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	③		
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외교부			
장관,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			
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			
관계 기관·단체의 장과 <u>학식</u>	<u>여성</u>		
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	·아동·장애인 및 청소년 분		
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	야의 전문가 등 국제개발협력		
다.	에 관한 학식과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
제11조(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	제11조(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		
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		
	으 )		
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	②		
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9. 헌법에 따라 체결・공포된		
	조약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		
	하는 데 필요한 사항		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		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		